

#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91
----------	------

2021년 3월 5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2월 5일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
2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3. 상정일자 :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3월 3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경영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코로나 19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대면회의 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, 시민건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,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# 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개정안의 취지

- 코로나 19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대면회의 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, 시민건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#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시민건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현행 조례 제9조<sup>1)</sup>에 따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설치되었음.
- 위원회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시민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시민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. 위원회는 2014년 최초 설치된 후 현재 제4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.

1) 제9조(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보건·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
  2.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·조정에 관한 사항
  3.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  4.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5.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6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
  7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
  8.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
  9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### 〈 시민건강위원회 구성 현황 〉

구 분	1기	2기	3기	4기(예정)
임기(2년)	'14.10.17 ~ '16.10.16	'17.01.11 ~ '19.01.10	'19.02.25 ~ '21.02.24	'21.02.25 ~ '23.02.24
위원구성	30명(위촉직 28, 당연직 2명)	30명(위촉직 28, 당연직 2명)	30명(위촉직 28, 당연직 2명)	30명(위촉직 28, 당연직 2명)

- 2020년의 위원회 운영 실적은 조례 제12조 4항<sup>2)</sup>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으로 8월에 실시한 기획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볼 수 없음으로 연간개최 의무 횟수인 4회 중 2회만이 개최되었음.
- 또한, 대면회의로 진행하던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식이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 심의로 대체되어 진행되었음.

### 〈 2020년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세부실적 〉

구분	회의날짜	주 요 내 용	참석인원
2020	2020.8.18. (기획회의)	-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심의 - 코로나 19 대응방안 논의	7
	2020.8.31. (1차, 서면)	-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보고 -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심의(계속) - 코로나 19 대응 및 시민건강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	26
	2020.12.21. (2차, 서면)	- 제4기 시민건강위원회 구성계획 - 2021년도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	20

2) 제12조(회의 운영)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서면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이 안전에 대한 서면검토 후 의견작성과 가·부 의견을 통보하면 다수결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게 하게 되는 단점이 있음.
- 또한, 시민건강위원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건강정책을 마련하고 심의하고자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서면심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은 각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.

<2020년 제1차 시민건강위원회 심의 계획>

**심의 개요**

- 심의기간 : '20. 8. 31.(월) ~ 9. 01.(화)
- 심의안건 : 제7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계획
  - ※ 사전 기획회의(20.8.12.)에서 논의된 아래 안건은 서면 보고로 같음
    - 시민건강위원회 분과별 핵심 과제 추진현황
    - '20년 하반기 시민건강학교 운영(안)
    -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현황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  - 위원 각각 서면검토 후 의견작성 및 서명 날인한 의결서에 따라 결정
  - 결정방법 : 원안가결, 부결 위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결정
- 심의위원 : 제3기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 위원
- 서면심의 진행 사유
  -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하여 서면 심의로 대체하여 진행

### 3 종합의견

-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 회의운영 방식으로 비대면 원격 회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바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건강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과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는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  
발 의 자 : 김경영, 권수정, 김소양,  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  
이병도, 이영실, 이정인,  
홍성룡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코로나 19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대면회의 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, 시민건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,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원격회의)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2조의2(원격회의)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</u>